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공중위생업 시설기준 - 목욕장업	3
업종별 시설기준	3
영업자 준수사항	3
목욕실 등의 청결	3
발한실 등의 안전관리	3
조명 및 환기	3
그 밖의 준수사항	4

공중위생업 시설기준

식품위생업 시설기준

위생업소현황

[· 목욕장업](#) · 이용업 · 미용업 · 숙박업 · 세탁업 · 위생관리용역업

업종별 시설기준

- 목욕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,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조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, 법 제2조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발한실 내에 발열기(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,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(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)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.
-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목욕실, 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 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
영업자 준수사항

◎ 목욕실 등의 청결

1.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.
2. 탈의실 옷장 목욕실 발한실 물통 깔판 휴게실 휴식실 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,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.
3. 수건 가운 및 대여 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.
4.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.
5.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.
6. 욕수는 별표 2의 1. 욕수의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.

◎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

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,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.

◎ 조명 및 환기

1. 발한실 휴게실 탈의실 접객대 복도 계단 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 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2. 휴식실 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3. 목욕실 편의시설 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◎ 그 밖의 준수사항

1.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.
 -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(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
 -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
 -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2.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.
3. 목욕실 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,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.
4. 목욕실 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.
5.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,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.
6.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.
 -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
 -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
 -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
 - 노약자 임신부 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
 -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
 - 출혈을 많이 한 자
7. 법 제2조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8.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.
9.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「먹는물 관리법」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.
10.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:00 이후부터 05:00까지 「청소년보호법」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1.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 된 명칭(상호)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2. 영업소 안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
GANGJIN

Web Contents

